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0. . .<br>(제 회)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총리<br>(인사혁신처 소관) |
| 제출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 수행과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민간부문에 비하여 부족한 긴급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또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공직사회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체휴무, 재해구호휴가 등 제도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공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가 사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임.

## 3. 주요내용

가.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 요건 확대 (안 제11조제2항, 안 제11조제5항)

-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한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근무일에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경찰’ 명시(안 제19조제2호)

- 기존에는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법원, 검찰만 예시되어 있으나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될 경우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국기가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여 공가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재해구호휴가 일수 확대(안 제20조제9항)

-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에 관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부여하는 재해 구호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

라. 긴급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도입(안 제20조제14항)

- 기존에는 공무원의 가족 중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녀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6.00.~7.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근무”로, “휴무”를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대체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검찰”을 “검찰, 경찰”로 한다.

제20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20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 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공무원의 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등이 휴업 또는 휴원·휴교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나.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 중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종전의 제20조제9항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20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제20조제9항에 따라 시행일까지 사용한 재해구호휴가 일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생략)<br>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u>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u> 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u>휴무</u>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br>③·④ (생략)<br>⑤ <u>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u><br>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br>1. (생략)<br>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u>검찰</u>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 |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u>근무</u> -----<br>-----<br>----- <u>휴무(이하 “대체 휴무”라 한다)</u> -----<br>-. -----<br>-----<br>-----<br>-----.<br>③·④ (현행과 같음)<br>⑤ <u>제2항 및 제4항-----</u><br><u>대체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시간</u> -----<br>-----.<br>제19조(공가) -----<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br><u>검찰, 경찰</u> ----- |

에 소환되었을 때

3. ~ 12. (생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⑧ (생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⑩ ~ ⑬ (생략)

⑭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

-----

3. ~ 12.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⑩ ~ ⑬ (현행과 같음)

⑭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  
-----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1. 공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공무원 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등이 휴업 또는 휴원·휴교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

##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  
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  
다)에 동행하거나 미성년  
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  
우

2.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나.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 중 손자녀로 인하여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                                                                                |                   |
|--------------------------------------------------------------------------------|-------------------|
| <p><u>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u></p> <p>⑮ (생 략)</p> | <p>⑮ (현행과 같음)</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인사혁신처 복무과 |                        |
|-----------|------------------------|
| 연 락 처     | (044) 201 - 8444, 8445 |